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7.



박 종 길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제5항은 쓰레기 배출 시 쓰레기봉투의 무게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2조제3항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의2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제2항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043
----------	---------

발의일자: 2020. 6. 30.

발 의 자: 박종길, 이영빈, 이신자,
배지훈, 박정환, 서민우,
윤권근, 안영란, 박왕규

1. 개정이유

-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항)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신설(안 제12조 제3항 제6호부터 제8호)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 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5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100ℓ : 25kg 이하
2. 75ℓ : 19kg 이하
3. 50ℓ : 13kg 이하

제12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금지급내역, 수거량 집계표 및 계량증명서(계근전표)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7. 대행업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균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u>100 ℥ : 25kg 이하</u> 2. <u>75 ℥ : 19kg 이하</u> 3. <u>50 ℥ : 13kg 이하</u>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규정의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따른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임금지급내역, 수거량 집계표 및 계량증명서(계근전표)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7. <u>대행업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8. <u>그 밖의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u>
④ ~ ⑧ (생 략) <u><신 설></u>	④ ~ ⑧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u>

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
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
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
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 · 매립 등 처리시설 반
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
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
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
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
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
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
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
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
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에
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
야 한다.

라.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하으로 3대 이상 설치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1.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 라.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중 제1호가목1)에 따라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 2 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과 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4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주민,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분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와 관련된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초과하는 건 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 연간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

4.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경우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부적절한 위생관리로 인한 외관불결 및 악취발생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가로·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 함유하여 제작하되, 생분해성물질은 생봉과

성 봉투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및 물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생분해성물질이 30%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④ 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 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 별로 봉투반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환경청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무료지급용 일반용 봉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1.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
2.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

제10조의3(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규정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3. 판매소 지정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의 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 규정의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따른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물량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해당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소각 및 징수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은 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불법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정

산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3.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4. 그 밖의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⑧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매립 및 소각시설(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페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 3 장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공원, 유원지 및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공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12조에 따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을 대행 수수료로 정산할 수 있다.
- ④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폐기물 수거일로부터 7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납입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대구광역시 매립장 등 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2. 삭제
3.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5.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